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70
----------	------

제출일 : 2020. 4. .
제출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학교운영과)

1. 제출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조항 정비

- 1)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비치 (안 제7조)
- 2)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안 제8조)
- 3)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별표3)의 개정에 따라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선(안 제32조)

나.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 1)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토석채취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이상으로 산정(안 제31조)

- 2) 농경지 수의매각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 규정 명시(안 제41조제6호)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1) 공유재산 취득사무 중 신설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입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안 제4조제1항제2호)
- 2)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제22조제8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각종 인용 법령의 개정 내용 정비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개정으로 벤처기업전용 단지를 제외(안 제29조제4항제5호)
- 2)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안 제33조제1항)
-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명 개정(안 제33조제3항)
-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66조)

4. 개정안: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입법예고

- 기간 : 2020. 2. 14. ~ 2020. 3. 4.
- 제출 의견 : 의견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라. 비용추계서: 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불입참조(부패유발요인과 무관)
-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대상 제외 대상(「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법”, “영”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속교육기관”을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토지”를 “신설 학교용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관서”를 “해당 관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심의회”를 “본청에 두는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다목 중 “업무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심의회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토지안”을 “토지 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의 규정”을 “영 제7조”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대상재산”을 “대상 재산”으로 한

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를 “영 제17조에 따르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0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2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를 “일반경쟁입찰로”로,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2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대부관련”을 “대부 관련”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연고권의 배제 및 보험가입)”을 “(연고권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배제 하여야 하고, 대부계약(무상포함)시 영 제4조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하게 하여야”를 “배제하여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를 “그 점유기관과”로 한다.

제27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50이상을 당해 지역내”를 “50 이상을 해당 지역 내”로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제29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30이상”을 “3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은 당해”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은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제33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

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중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을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으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년이하”를 “1년 이하”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30일이전”을 “30일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토지중 광역시장(또는 도시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토지 중 광역시장(또는 도시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400제곱미터이하”를 “4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호에 따라”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호 중 “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2조 중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한다.

제49조 중 “기타 소속공무원”을 “그 밖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의하여 당해기관”을 “따라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을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54조의 규정”을 “제54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운영비중”을 “운영비 중”으로 한다.

제60조 중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49조부터 제59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3,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은닉재산중”을 “은닉재산 중”으로 한다.

제64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5조 중 “공유재산중”을 “공유재산 중”으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한다.

제6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를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토석채취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 5. (생략)

제3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3. -----
-----제34조에 따른-----

--.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 해당 -----

해당 -----.

③ -----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
----- 해당 -----
-----.

④ ----- 제3항에 따른 -----

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같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 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 당해 관서에 속하는 일반 재산의 관리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교실은 제외한다.

라. 당해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마. (생략)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 소속 공무원 중 -----

-----.

제4조(위임사무) ① ----- 제3조제2항에 따라 -----

1. -----

가. 해당 -----

나. 해당 -----

다. -----
----- 취득·처분.

-----.

라. 해당 -----

마. (현행과 같음)

2. -----

가. -----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토지 매입 제외)

나. (생략)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철
거·교환·양여·대부·사
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
에 의한 현물출자

라. ~ 바. (생략)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
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
가

나. 당해관서에 속하는 일반재
산의 관리

다.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교실은 제외한다.

라. 당해 관서에서 필요한 재
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마. (생략)

4. (생략)

신설 학교용지

나. (현행과 같음)

다.

- 다른 -

라. ~ 바. (현행과 같음)

3.

가. 해당

나. 해당 관서

다.

----- 취득·처분.

라. 해당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교육지원청 심의회"라 한다)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 6. (생략)
- 7.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

- 1. ~ 6. (현행과 같음)
- 7.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제6호를 위반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⑤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
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다. ----- 업무
관련 -----

③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
----- 심
의회-----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
회-----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3항-----

2. ----- 제57조제1항에 따
라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 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

- 1.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

③ -----

-----.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 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8. 영 제4조에 의한 보험 가입 등

----- 대상
재산-----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
----- 영 제17
조에 따르며 -----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아니 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

-----.

- 1. ~ 7. (현행과 같음)
- <삭제>

⑧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 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⑧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

----- 제21조에 따라 -----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

-----.

② ----- 제1항에 따라 -----

----- 영 제14
조에 따라 -----
-----.

③ 제1항에 따라 -----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

-----.

⑤ 일반경쟁입찰로 -----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25조(연고권의 배제 및 보험가입)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하고, 대부계약(무상포함)시 영 제4조

-- 영 제21조에 따른 -----
----- 해당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

-----.

제24조(행정재산의 준용 등) ----

----- 그 밖의 -----
----- 대부 관련 -----
-----.

제25조(연고권의 배제) -----

----- 배제하여야 -----.

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 법 제35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 중 -----

----- 그
점유기관과 -----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외국인투자 촉

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진법」 제2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

1. -----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2. ----- 제8조에 따
른 -----

3. ----- 제2조에 따른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6. (생략)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조에 따라 -----

5.·6.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

조에 따른 -----

----- 해당 -----

----- 50 이

상-----

-----.

② -----

----- 해당 -----

----- 40 이상-----.

1.·2.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25 이상-----.

- 1. ~ 4. (생략)
- 5.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1. · 2. (생략)
-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시가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제27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 1. ~ 4. (현행과 같음)
- 5.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해당 ----- 10 이상-----.

④ -----
----- 해당 -----
---- 10 이상-----.

- 1. · 2. (현행과 같음)
- 3. ----- 따라 -----

- 4. ----- 따른 -----

- 5. -----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
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생략)

7.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
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
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
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
분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
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
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
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집적시설-----

6. (현행과 같음)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
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
----- 50명 이상-----
----- 50 이상
을 해당 지역 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도 -----

해당 ----- 50
이상-----.

⑥-----
-----제3조제2항에 따른

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조에 따른 -----
----- 해당 -----
----- 10 이상 -----

5. -----
-----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은 해당 -----
10 이상 -----

제31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

9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영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

- 따라 -----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
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
로 한다.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
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1.·2.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
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④ 삭제

⑤·⑥ (생략)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
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제3조의2에 따른-----

-----.

1.·2. (현행과 같음)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

1.·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

1. ·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교육청에 유리한 때
-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1. -----

----- 경우
- 2. -----
----- 경우
- 3. -----
----- 경우

③ ----- 제2항에 따른 -----

----- 영 제3
1조에 따른 -----
-----.

④ 제3항에 따라 -----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 . --

----- .

⑤ ----- 제4항에 따른 -----

----- .

제35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
----- 5 이상 -----

----- .

제36조(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① -----

----- 1년 이하 -----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⑤ 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

----- 1년
이상-----
----- 30일
이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

-----.

③ 영 제32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3항-----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 제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광역시장(또는 도시자)이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10년 이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

----- 토지 중 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
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각하는 경우

2. (생략)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
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
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2조제2호에 따른 -----
----- 400
제곱미터 이하-----

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5년 이
내-----

----- 각 호-----.

1. -----
제13호에 따라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4. -----
-----제2조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⑤ 삭제

⑥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3. (생략)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

---- 해당 -----

⑥ 영 제45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와 같다.

1. ~ 2. (생략)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생략)
4. 삭제
5. (생략)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달성군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 제57조제1항에 따른 -----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7. · 8. (생략)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를 당해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

7. · 8. (현행과 같음)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 2항에 따라 -----

-----.

제48조(청사의 설계) -----
----- 따르되, -----
-----.

1. ~ 7. (현행과 같음)

제49조(정의) -----

----- 그 밖에 소속 공무원 -----

-----.

제51조(사용허가) -----
----- 따라 해당 기관 -----
----- 해당 -----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생략)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생략)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제52조에 따른 -----

4. (현행과 같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1. ~ 3. (현행과 같음)

4. 응접세트, 커튼 -----

5. (현행과 같음)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

1. ~ 3. (생략)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
용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
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
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
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
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
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0조(공용임차주택의 준용) 채
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 제55조에
따라 -----

-----.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해당 -----

-----.

② 제1항-----

----- 운영비중 -----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용임차주택의 준용) ---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따른 -----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3천만원

1. --- 각 목-----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은닉재산 중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

범위

제65조(합필의 신청) -----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
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
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 공유재산 중 -----

----- 지체 없이 해당 -----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해
당 -----
-----.
해당 -----

--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시행 2020. 1. 3]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일부개정]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33. (생략)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9. 12. 15.]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frac{\text{옥상(층효용비} \times \text{용도비} \times \text{사용허가면적)}}{\sum_{\text{최상층}}^{\text{최하층}} \text{건물(층연면적} \times \text{층효용비} \times \text{용도비}) + \text{옥상(층효용비} \times \text{용도비} \times \text{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4>

용도비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 주차장)	옥 상
용도비	100	60	30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 8. (생략)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학교운영과 행정7급 박정민(231-072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평 가 담 당	(소속) 감사관실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한성식
입 안 주 관 부 서	시교육청 학교운영과	통 보 (조 치) 일	2020. 2.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p>(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①상위법령의 위임 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조항 정비 ②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③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p>(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①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 ②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대구교육005			
정책명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운영과		
	담당자명	박정민	전화번호	053-231-0726
담당부서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명	배현주	전화번호	053-231-0368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2월 1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2월 17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2월 25일</p>				